

```
[ 2017.1.2.] [ 217 , 2017.1.2., ]
                                          ) 044 - 200 - 5815, 5814
 1
1 ( )
[ 2010.6.10.]
2 (
                    가 ) 「 」(
                                      ) 6
(寄港)
              (港間)
                                       가
                                                    1
            가
[ 2010.6.10.]
2
3 (
          ) 7 1
                       3
                                                    2
                                       2012.1.18.>
                                       " )가 24
1. <sup>r</sup>
                       2
                   10
 가.
      (船體線圖)( 4
                                        )
                 3 1
    ( )
  . 4 1
                   ( 6
                                                 )
                                            )
      가 24
2.
가.
                  (가
                              ) : 1 가
      가 12
. 가
                  : 1 가
3.
       : 1 가
 1
                    (造船地)・ (造船者)・ (進水日)
                                                (船舶原名)
           가
[ 2010.6.10.]
4 (
                           )
                                         3 1
```

```
(
                                               2013.3.24.>
                                                  3
                  1
                  1
                                                              ( 3
                                )
    2
1. 「1969
                                가
 )
                  가
2. r (
                                                            60
                                                                 2
                       )
3. 6
[ 2010.6.10.]
5 (
                                     가
1
                                          2
                                 1
1
[
      2010.6.10.]
6 (
                  )
                    가 가
                                 3
                  2
                                     1
[
       2010.6.10.]
                  )
7 (
                       7
                                                  , 3
                                                           5
                      가
       2012.6.26.>
1.
2.
3.
4.
5.
                                                          )
6.
                                                            )
                  1
                                                                     . <
2013.3.24.>
```

```
2
                                                                            5
                                                                     3
     1
                                                         3 (
                                                                                  )
                                         가
     3
                                                                                  5
                                                                                      2
                                   2013.10.24.>
                            . <
 1.
 2.
     5
       2013.10.24.>
                                                 6
                                                             2013.10.24.>
 [
        2010.6.10.]
8 (
                       )
                            3
                                      5
          2
                                                                                   2
                                                  6
                                         1
                                                                             가
           2013.3.24.>
 [
         2010.6.10.]
9 (
                         )
[
         2010.6.10.]
   3
10 (
                                                                       6
(
 1.
                      [
                ( r
 2.
                                2
                                                     36
                                                             2011.4.11.>
         2010.6.10.]
 [
11 (
                          10
                                                                      7
                                                                                       (船舶原
           )
簿)
```

```
1.
2.
                          (IMO )
3.
4.
5.
6.
7.
    (船質)
8.
    (帆船)
            (帆裝)
      [
9.
             (型)
                       85
                                                          (吃水線) (全長)
96
                       (船首材)
                                         (舵頭材)
       ]
10.
                                 (金屬製 外板)
                                                                 (肋骨 外面)
         [
                                                      (船體 外面)
           ]
11.
                                                     (龍骨)
        . ]
12.
13.
        (蔽圍場所)
가.
1)
      (船首樓)
2)
      (船橋樓)
3)
      (船尾樓)
4)
5)
14.
가.
15.
16.
17.
18.
19.
20.
                     (
                                                )
21.
1
                      가 가
                                      가
[
      2010.6.10.]
```

```
12 (
                                                              8
                 )
                            11
                       . < 2013.10.24.>
                           7 5 7
                       2013.10.24.>
       2010.6.10.]
[
13 (
                           )
           1
                                가
[
       2010.6.10.]
14 (
                       )
                             9
                                                                       9
                             (
         )
                                              10
                             7 5
                                          7
                             2013.10.24.>
[ 2010.6.10.]
                                                        2
15 (
                        )
                            12
                                                   14
      (英譯書)
                               11
      36 1
  2011.4.11.>
                                               12
 13
                                                                7
                                                     7 5
                                                                       . <
2013.10.24.>
[ 2010.6.10.]
 4
                          2010.6.10.>
16 ( )
                                                     11
                                            50
                                                               25
                                                                   . <
2012.6.26., 2014.11.19.>
1.
                       (海岸望樓)
                                     가
```

```
2.
 3.
                                                가
 4.
        2010.6.10.]
[
17 (
                        )
                                 11
                     (船首兩舷)
 1.
                                          (船尾)
                                                                       10
 (
                       )
 2.
                               10
 3.
                                                            (最大吃水線)
                                                                                      20
                                         (船底)
                                                                 가
            10
                                                      1
                            가
[
         2010.6.10.]
   5
                         2010.6.10.>
                     )
18 (
                              13 1
                                           5
              14
                                  (
                                               )
                                                                                        가
                                                            3
                                                                         2012.6.26.>
 1.
 2.
          ( 4
                                                     )
                 3
 3.
 4.
      (
          )
 5.
 6.
                                    [
              ]
                                                                2013.3.24.>
                                                      15
              2
                                                                                     16
    2
                                      8
                                             9
                                                       5
                                                               7
                                                              2013.10.24.>
         2010.6.10.]
 [
```

```
19 (
             )
      . < 2012.1.18.>
1.
2. 11 1
1
( )
.< 2012.1.18.>
                                            17
                                    1
1.
2.
                        ( 1 1
        (12
        1 1
                                            .< 2012.1.18.,
2013.3.24.>
3
                       8 , 9 18
                                   3
[ 2010.6.10.]
20 (
            ) 13
                                                   18
[ 2010.6.10.]
6
21 (
      ) 18
                                                   19
1 2
                                              30
                . < 2014.10.6.>
1.
2.
                         )
3.
        1
        1
                           2
[ 2010.6.10.]
22 (
                   )
```

```
[ 2010.6.10.]
23 (
             ) 22 1
                                                              20
                       」 36
              2012.1.18., 2012.6.26.>
1.
      22
               1 · 3
2.
      22
               2
           1
 가.
                               )
               22
    3
                                                   23
                                              25
                                                                 2014.10.6.>
                              24
[ 2010.6.10.]
7
        <2008.2.4.>
24
       <2008.2.4.>
25
       <2008.2.4.>
26
       <2008.2.4.>
27
       <2008.2.4.>
28
       <2008.2.4.>
29
       <2008.2.4.>
       <2008.2.4.>
30
8
31 (
                                18
                                       22
)
1.
2.
3.
```

```
8 , 18 22
[ 2010.6.10.]
32 (
                     ) 28
                                  가
                                                   . <
2013.3.24.>
[ 2010.6.10.]
33 ( )
                    29 2 3
14
[ 2010.6.10.]
34 ( ) 30
                         1 2
                          가
    30 2
                20
                                           10
2014.10.6.>
        3
                   .< 2014.10.6.>
              30
.< 2014.10.6.>
[ 2010.6.10.]
35 ( )
                                                   3 (
                         )
2017.1.2.>
1. 5
                  : 2017 1 1
2. 6
                     : 2017 1 1
3. 7
                     : 2017 1 1
4. 14
                      : 2017 1 1
[ 2014.12.31.]
      < 156 ,2000.1.6.>
1 (
     )
2 (
                )
3 (
```

```
21 2 3 "
                     4 2 " "
                                   26 2" .
  6 · 8 53
        < 277 ,2004.8.7.>
        < 340 ,2006.6.26.>
        < 346 ,2006.11.2.>
(
   )
   ) 11 20 25 9
        < 386 ,2007.10.18.>
       < 390 ,2007.11.23.>
1 ( )
2 22
23 (
  4 3 2
 8 1
                                     45
 )
             60
                 2
 10 1 1
 24
        < 406 ,2008.2.4.>
```

```
1 ( ) 2008 2 4
 2 (
                     )
                                           25
 11
                           25
                                                           11
         < 4 ,2008.3.14.>
         < 92 ,2009.1.15.>
         < 246 ,2010.6.10.>
         < 349 ,2011.4.7.>
         < 350 ,2011.4.11.>
        < 437 ,2012.1.18.>
 1 (
      )
 2 (
                                                가
                     )
                                                              23 1
        < 481 ,2012.6.26.>
 1 (
       )
2 (
                   ) 16
     < 1 ,2013.3.24.>
1 ( )
2 4
```

```
5 (
           )
 4 1 , 7 2 , 8 2 , 18 2 , 19 3 , 32 , 5 , 15
   16
 32 "
                           16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5 , 15
Affairs"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63>
        < 49 ,2013.10.24.>
        < 84 ,2014.6.23.>
      < 102 ,2014.10.6.>
     )
1 (
2 (
            가
                                                   가
        1
      < 110 ,2014.11.19.>
1 (
     )
2 (
     )
     3 " " "
16
        < 127 ,2014.12.31.>
       < 217 ,2017.1.2.>
1 ( )
2
```

### [별표 1] <개정 2010,6,10>

##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제34조제I항 관련)

## 1. 총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	수수료의 종류	측정 및 전부개측	부분측정 및 일부개측
	5톤 미만	750	
5톤 이상	10톤 미만	1,500	750
10톤 이상	20톤 미만	2,250	
20톤 이상	50톤 미만	2,500	1 500
50톤 이상	100톤 미만	4,000	1,500
100톤 이상	300톤 미만	6,000	2 000
300톤 이상	500톤 미만	8,000	2,000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0	2.000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13,000	3,000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	16,000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	20,000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	25,000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	30,000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35,000	5,000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	40,000	3,000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	50,000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60,000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70,000	
50,000톤 이상		80,000	
111 -			

#### 비고

- 1.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총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 2. 외국에서 총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3. 공휴일에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2. 재화중량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총톤수의 구분	수수료의 종류	측정 및 전부개측	일부개측
	500톤 미만	8,000	2,000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0	3,000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13,000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	16,000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	20,000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	25,000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	30,000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35,000	5,000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	40,000	5,000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	50,000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60,000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70,000	
50,000톤 이상		80,000	
1 —	·	·	·

#### 비고

- 1.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재화중량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 2. 외국에서 재화중량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3. 공휴일에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 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3. 국제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수수료의 종류	측정 및	전부개측	일 부	개 측
총톤수의 구분		갑선박	을선박	갑선박	을선박
	50톤 미만	1,500	2,500	900	1 500
50톤 이상	100톤 미만	2,400	4,000	300	1,500
100톤 이상	300톤 미만	3,600	6,000	1,200	2,000
300톤 이상	500톤 미만	4,800	8,000	1,200	2,000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6,000	10,000	1,800	3,000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7,800	13,000	1,000	3,000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	9,600	16,000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	12,000	20,000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	15,000	25,000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	18,000	30,000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21,000	35,000	2000	5,000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	24,000	40,000	3,000	5,000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	30,000	50,000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36,000	60,000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42,000	70,000		
50,000톤 이상		48,000	80,000		

비고

- 1. "갑선박"이란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으로서 총톤수의 산정에 사용한 수 치를 적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 2. "을선박"이란 갑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 3.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국제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 4. 기준홀수선 또는 여객정원수의 변경으로 인한 순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일부개측으로 본다.
- 5. 외국에서 국제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6. 공휴일에 국제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별표 2] <개정 2011,4,7>

##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제34조제I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수수료
1.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500
2. 제12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500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을 신청하는 경우	1장당 100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 는 경우	500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 서의 영역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000
6.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국제 톤수확인서의 발급 또는 그 변경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장당 2,000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 청하는 경우	500
8.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적항의 변경(지방청장의 관할구역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000
9.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 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500
10.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00
11. 그 밖에 각종 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500

#### 비고

- I.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위 표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II호에 따른 각종 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 2. 수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선박법 시행규칙 [별자 제1호서식] <개정 2014,10,6,>

#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성명(법인명)			생년윌일(법	d인등록번.	호)
소유자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선박의 명칭					
	국적		선박의 종류			
	선적항		총톤수 톤		톤	
	선박의 용도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신청내용	기항하려는 항명	기항하려는 일시				
	기 항하려는 이유(여객이나 운송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나 수량 등을 적을 것)					
	최근 1년간 기항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선박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함만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재	<b>→</b>	허가 및 발급	<b>→</b>	수령
신청인	,	지방해양항만청	,	지방해양항만청	,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18>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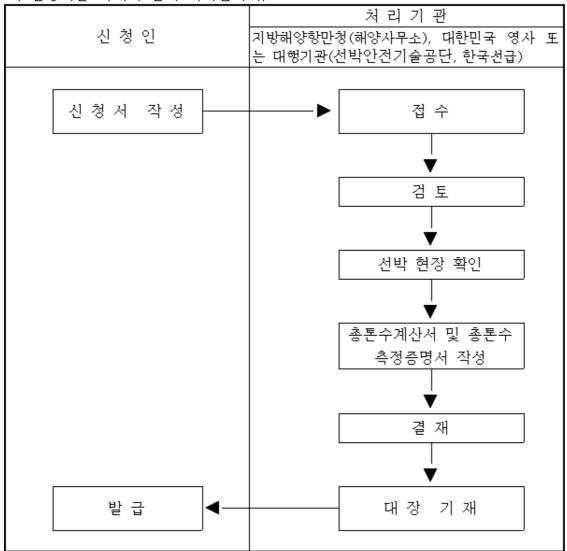
12 1 112 1 11	<i>y</i>			144 17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			처리기 10일(소형선	
소 ① 성명(대표자명)		② 생년월일	10월(소영산	력. 3월기
유 ③ 주소		e ocee		
자 <u>@ 기고</u> 자 <b>④</b> 상호		 ( <u></u> 정호	 }번호 :	)
<u> </u>		(6) 선박의 명칭(원명)		
<u> </u>		® 총톤수		
9 착공일		® 진수일		
⑪ 조선지		⑫ 조선자		
⑩ 신청 사유	□신조 □수입	□개측 □부분	_ 측정 □그박	¦의 사유
(A) 총톤수의 측정을 받 으려는 날짜 및 장소				
⑮ 비고				
「선박법」 제7조 5 제2항에 따라 총톤수의				
			년 월	일
지방해양항만청(해양	<b>にしロ ム )</b> スト	신청인	(서명 또·	는 인)
시청배경경원경(배경   대한민국영사	3/17エア3			
세 전 전 국 3 A   선박안전기술공단이	<sub>사장</sub> 귀 <sup>7</sup>	하		
한 국 선 급 회 장				
※ 구비서류 1,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미 제(조제(호)	∥ 따른 종론수의 즉정 및	조루스이 ㅂ브즈	수수료
정 신청		∥ Mc o <del>c</del> t⊣ ¬o ≥	0 <del>-</del>	선박톤수
가, 즉정길이가 24미터 이상 (1) 일반배치도		. 71 <b>4</b> 1 7-7430) of 710	1417 0711 17101	<del>측</del> 정 수  수 료 표
(2) 선체선도(船體線圖)( F1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	969년 선택폰수 측정 <mark>대</mark> 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	I 완안 국제엽약」에 가입 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3하고 우리나라와 종론수의 즉정을	ㅜ 표 표  또는 대
받은 선박은 제외합니( (3) 중앙횡단면도	4)			행기관에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서 정하는
(B) 종혼수계산서(종혼수의 (7)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 구조물의 설계도서(종)	만 해당합니다) 토수의 계사과 관련되 견의	우마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  준에 따릅
나 측정길이가 24미터 이만 (1)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민 선박			니다
(2) 즉정길이가 12미터 미민	PO 기선[(I)의 선박은	제외합니다]과 범선: 일반	배치도	
(3)(1) 및 (2)의 선박 외의 다. 수면비행선박	선택 클린메시도, 공장	3800x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비고: 「선박법 시행규칙」:	구조물의 설계도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혼	추의 측정을 신청하는 경	경우 지방해양항만	
청장(해양사무소장) [	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우에는 해당 선박	
합니다. 2, 「선박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관한 설계도서				
공에 전한 필계도시				

21 Dmm×297mm(일반용지 6D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 1. ① 성명(대표자명)란의 경우 선박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의 이름을 적고 "외 몇 명"이라고 부기할 것
- 2. ⑤ 선박의 종류란에는 "기선", "범선" 또는 "부선"으로 적을 것
- 3. ⑥ 선박의 명칭(원명)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적고, (원명)의 난에는 외국선 박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취득 전 최근의 선박의 명칭을 적고,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된 경우에는 총톤 수 측정신청 전 최근 선박의 명칭을 적을 것
- 4. 검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 등을 적을 것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6.10>

제	호									
		선박	남총	톤수	3	추정증1	명서			
서 야	성 명 (법인명)									
자	주 소									
	선박번호									
	IMO번호					-	총톤수			톤
	호출부호					폐위 경	장소의 합계	l용적		m³
	선박의 종류					상갑판	판 아래의 선	용적		m³
	선박의 명칭						합계용	적		m³
	선적항						선수루의	용적		m³
	선질					상갑판	선교루의	용적		m³
	범선의 범장					위의 용적	선미루의	용적		m³
	추진기관	기관	kW	대	용		갑판실의	용적		m³
	추진기		추진기	대	적		그쀼쬬	의 용적		m³
	조선지					제외 7	장소의 합계	l용적		m³
	조선자						선수루의	용적		m³
	진수일	년	월	일		제외	선교류의	용적		m³
자	길이			m		장소의	선미루의	용적		m°
요 치	너비			m		용적	갑판실의	용적		$ m m^s$
· 수	깊이			m			그쀼쬬	의 용적		$ m m^{s}$
	 「선박법 시행규칙	」 제4	 조제2형	항·제	3팅	보 또는 2	제5조제3항(	에 따리	나 위와	같이
발급	급합니다.									
							년	월	Ç	길
		지 방하	#양항	만청(	·해 º	걍사무 <i>소</i>	△)장			
		대 한	민코	7 영	사		직인			
						기사장)	' '			
		(한 코	† 선 f	급 회	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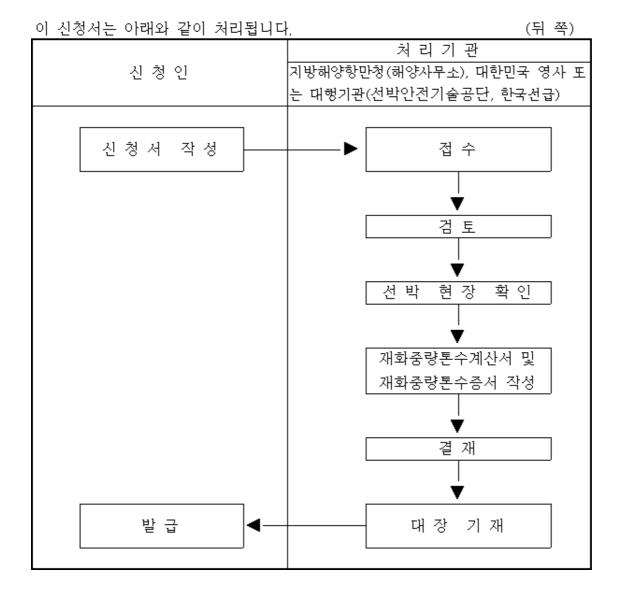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6.26>

(양 쪽)

<u> </u>	1 (477.14)	5 2012,0,202			(77 -1/	
	재 호	화중량톤수 측	·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u>소</u>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u> </u>	
유	<u> </u>		0022			
''   자	<u>' 모</u> 상호			 (전화:	)	
. ,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선적항			l		
	신청구분	□신규측정 [	 □개정			
측정	을 받으려는 날짜					
및 7	왕소					
	「선박법」 제7조제	4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7조제1	항에 따라 :	재화중량톤	
수의	<sup>과</sup> 측정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월 일			
			신청인	(서명 :	또는 인)	
7	기방해양항만청(해영	당사무소)장				
Г	대 한 민 국 영 사	¬1 <del>-</del> 1				
?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귀하 사장				
ą	한국 선급회장					
*	첨부서류:			ਜੰ	`수료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선박론	수 측정 수	
5,	변경된 부분의 구	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호	∤중 수료표	또는 대행	
,	량톤수 개측의 경우	<sup>2</sup> 만 해당합니다)		기관에	서 정하는	
6.	6. 그 밖에 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구조물이 있는 수수료 기준에 띠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릅니다.					
비	고: 제3조 또는 제!	5조에 따라 총통수	- -의 측정 또는 총톤	<u></u> ♣수		
'			관할하는 지방청정			
			서류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4>

증서번호 제

Certificate No.

재 화 중 량 톤 수 중 서

DEADWEIGHT TONNAGE CERTIFICATE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선박번호 또는 호 출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연월일 <sup>(주)</sup> *Date

(주) 킬이 거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 또는 개조를 한 날짜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 as appropriate,

#### 주요 치수 MAIN DIMENSIONS

길이 Length	너비 Breadth	Moulded depth amid ships	선박의 중앙에서 기준흘수선 까지의 형 깊이 Moulded Depth amid ships to the Summer Load Line

톤 수 선 박 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재화중량톤수

DEADWEIGHT TONNAGE

이 증서는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재화중량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adweight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면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u>민</u> <u>월</u> 일 (증서의 발행 장소)(발행일)

Issued at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대한민국영사

The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 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 ×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_	MHHH	시체그제	THE	제5호의2서식1	2.KI24	2012 10 20	as.
	쓰막법	시앵큐직	T열AL	제5호의2제의다	《산골》	2013.10.24	4>

[]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 ]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재발급신청서
[]국제 톤 수 증서	[]국제톤수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그용이 이후한 같은 건물건이 국제 당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u> </u>	1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일			
소유자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상호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000-00000	IMO 번호	ž 🗆			]	
신청내용	증서 번호							
5.9419	발급일		발급청					
	신청 사유	[1]분실 [2]훼손						
	비고							
「선박법 위와 같0		- 조제 5항, 제 1 2 조제 2항, 제 1 4 조제 신청합니다.	3항, 제	15조제3	}항, 제	네18조제	5항)에	따라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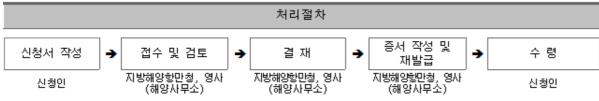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함만청장 00영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당 중서(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중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서 재발급 신청 시에 중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재발급된 중서를 선박에 비치 후 이전 중서의 원본을 제출	수수료 500원
지방해양항만청장 확인사항	이전 증서 번호 등 이전 발급 사실 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선박법 시행규칙 [별자 제6호서식] <개정 2013,10,24>

# 선박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길		처리기간	2일(소형선박의 포함하는 경우 7	총톤수측정을 일)
	성명(법인명)			주민	!(법인)등록번호	
소유자	주소(도로명) 및 (	연락처 (전화번호	호 등)			
	상호					
	선박의 명칭					
	선박의 용도ㅁㅁ				(* 선박용	도 코드 참고)
	선적항			총톤수		톤
신청내용	길이	m	너비	m	깊이	m
	공유자 유무口	[1]있음 [2]		호출부호		
	신청의 사유	[1]신조 [2]	수입 [3]부	활 [4]개조	[5]기타	
	선박번호			IMO 번호		
<b>「선박법</b>	」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	에 따라 선박의 등	등록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ㅇㅇ지	방해양함만청정	<b>}</b> 귀하				
첨부서류	정증명서를 빌	발급받은 경우만 해	당합니다)	<ul><li>선급법인으로부터 ( 선박등기 대상 선박민</li></ul>	1,	수수료 선박등록 신청 : 1,500원
지방해양항만 확인사항	·청장 법인 동기사항증		71-211-212		•	증서발급 수수료 : 500원
			처리절 차			
신청서 작		(토, 결재 →	선박원부등록		_ 발급 _	수 령
신청인	지방해! (해양/	강항만청 사무소)	지방해양항만 (해양사무소	청 지방해양 ) (해양사	항만청 무소)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6.10>

(앞 쪽)

# <u>선 박 원 부</u>

1. 조 선 지		2. 조선자		3. 진수일:	년 월 일
, 선 박 번 호					
4. IM O 번 호					
5. 호 출 부 호					
6. 선 박 의 종 류					
7. 선박의 명칭					
8. 선 적 항					
9. 선 질					
10. 범선의 범장					
11. 길 이	m	m	m	m	m
12. 녀 비	m	m	m	m	m
13. 깊 이	m	m	m	m	m
14 총 톤 수	톤	톤	톤	톤	퇀
15. 폐위 장소의 합계 <del>용</del> 적	m³	m³	m³	m³	m³
16. 상갑판 아래의 용적	m³	m³	m³	m³	m³
17. 상갑판 위의 용적	m³	m³	m³	m³	m³
18. 선수루의 용적	m³	m³	m³	m³	m³
19. 선교루의 용적	m³	m³	m³	m³	m³
20. 선미루의 용적	m³	m³	m³	m³	m³
21. 갑판실의 용적	m³	m³	m³	m³	m³
22.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³	m³	m³	m³	m³
23. 제외 장소의 합계 <del>용</del> 적	m³	m³	m³	m³	m³
24. 선수루의 용적	m³	m³	m³	m³	m³
25. 선교루의 용적	m³	m³	m³	m³	m³
26. 선미루의 용적	m³	m³	m³	m³	m³
27. 갑판실의 용적	m³	m³	m³	m³	m³
28.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³	m³	m³	m³	m³
29. 기관의 종류와 수					
30. 추진기의 종류와 수					
31. 등 록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32, 기 사					Onn - 207nn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뒤 쪽)

	소 유 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スム	거하바ㅎ	ען די				
(법인명)	(법인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공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기ㅂ	ען די				
(법인명)	(법인등록	번호)	주소	지분	비고				
			저당권 설정 등록 등						
순위	구분		사항란		등록일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6.10>

(앞 쪽)

(철 인)

# <u>선박국적증서</u>

제	호					
소	성 명					
유	(법인명)					
자	주 소					
선	박 번 호			총 :	톤 수	톤
ΙM	O 번호				폐위 장소의 합계용적	− m³
호	출 부 호			]	상갑판 아래의 용적	– m³
	박의 종류			]	상갑판 위의 용적	– m³
선병	박의 명칭			]	선수루의 용적	– m³
	적 항				선교루의 용적	– m³
	질				선미루의 용적	– m³
범	선의 범장			용	갑판실의 용적	
기관	·의 종류와 수					
추진	]기의 종류와 수			적	그 밖의 장소의 용적	
조 :	선 지			]	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조 :	선 자			1	선수루의 용적	− m³
진 -	수 일			1	선교루의 용적	– m³
3	_ 길이		m	1	선미루의 용적	– m³
	요니비		m	1	갑판실의 용적	– m³
치	수 깊이		m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m³
비	<u>.</u>					
	위의 사항은 정확	확하며 이 :	<u> 선박은 대</u>	하미	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

위의 사항은 정확하며 이 선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 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⑪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공 유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지 분	비고					

■ 선박법 시행규칙 [별자 제9호서식] <개정 2017, 1, 2,>

#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	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계	대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	록번호	)	
소유자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	터(전화번호 등)							
	선박의 종류			선박의 명	칭				
	선적항			선질					
	범선의 범장			기관의 종	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조선 지					
신청내용	조선자			진수일					
	길이		미터	너비					미터
	깊이		미터	총톤수					톤
	신청 사유								
	비고								
「선박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힝	- M CC	나라 임시선	박국적증/	서의 발	급을 성	신청합니	1다.
							년	윌	일
		신청인					()	네명 또는	인)
	방해양함만청(해역 국 영사	양사무소)장 <sup>귀</sup>	하						
구비서류	매매계약서 등 선	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	령할 수	수 있는 서류				수수료 500원	
		처리절	차						
신청서 작	작성 → 접수,	검토, 결재 →	김시선	박국적증서 발급	작성 및	<b>→</b>		수 령	
신청인	기방 (해양 대한			지방해양항만 (해양사무소 대한민국영사	 청 ) 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6.10>

	- 11 0 202010120-					
제 호	임시선박국	적중	-서			
	д , с , т	, .	'			
소 성명						
유 (법인명)						
자 주 소						
선박의 종특		자	선 지			
선박의 명취	칭	조	선 자			
선 적 항		진	수 일			
선 질		주	길 이			
범선의 범건	장	요 치	너 비			
기관의 종류와	수	수	깊 이			
추진기의 종류외	· 수	총	톤 수			
이 선박은 가지고 있음을 증	「선박법 시행규칙」 제14 (명합니다.	[조제]	2항에 따	라디	H한민국으	기 국적을
			1	년	월	일
	민국[지방해양항만청(해영 ) 민 국 영 사	ᆉᆉ무	·소)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선박법 시행규칙 [별자 제11호서식] <개정 2014.6.23>

# 영역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소유자	영문 성명(법인명)			생년윌일(법	[인등록번호)
<u> </u>	영문 주소(도로명) [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영문)				
신청내용	신청 구분	[]선박국적증서	[]임시선	선박국적증서	
	신청 사유				
	비고				

「선박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함만청(해양사무소)장 대한민국 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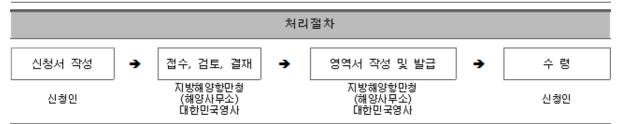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임시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신청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영사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신청에만 해당합니다)	1,000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영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영사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 (재활용품)]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6,10>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Cert, No						
Owners Name(Company): Address:						
Official Numb	oer	Gross Tonnagetons				
IMO Number		Total Capacity of Enclosed Spaces				
Signal Letters	S	cubic metres				
Kind of Vess	el	Under the Upper Deck				
Name of Ves	sel	cubic metres				
Port of Regis	try	Closed-in Spaces above the Upper				
Material of H	ull	Deckc	ubic metres			
Riggings(if a Sailing Vessel)		Forecastlecı	ıbic metres			
Type and Number of Engines		Bridgec	ubic metres			
Kind and Number of Propellers		Poopcı	ubic metres			
Where Built		Deck Housecı	ıbic metres			
	ders	Other Spacescı	ubic metres			
Date of Laun	ch	Total Capacity of Exempted Spaces				
		c	ubic metres			
		Forecastlecı	ıbic metres			
Main	Length metres	Bridgec	ubic metres			
Dimensions	Breadth metres	Poopcı	ubic metres			
	Depth metres	Deck Houses	cubic metres			
		Other Spacesc	ubic metres			
It is he	reby certified that the ab	oove described particulars	are exact in			
all respect, a	and the above mentioned t	vessel is of Korean Nation:	ality,			
The day of						
REPUBLIC OF KOREA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is a tru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of the above mentioned vessel,						
The day of						
(Signature)						
(Official Position)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6.10>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	TY(PROVISIO	NAL)		
Cert, No					
Owners Name(Company): Address:	Name(Company):				
Kind of Vessel	Where Built				
Name of Vessel	Name of Builders				
Port of Registry	Date of Launch				
Material of Hull	Main	Length	metres		
Riggings(if a Sailing Vessel)	Dimensions	Breadth			
Type and number of Engines		Depth			
Type and number of Propellers					
	above mentio day o REPUBLIC OF	f	of Korea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	ove is a true	translation of '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Provisional) of	the above m	entioned vessel			
<u>The</u>	day of				
(Signature)					
(Official I	Position)				

210mm×29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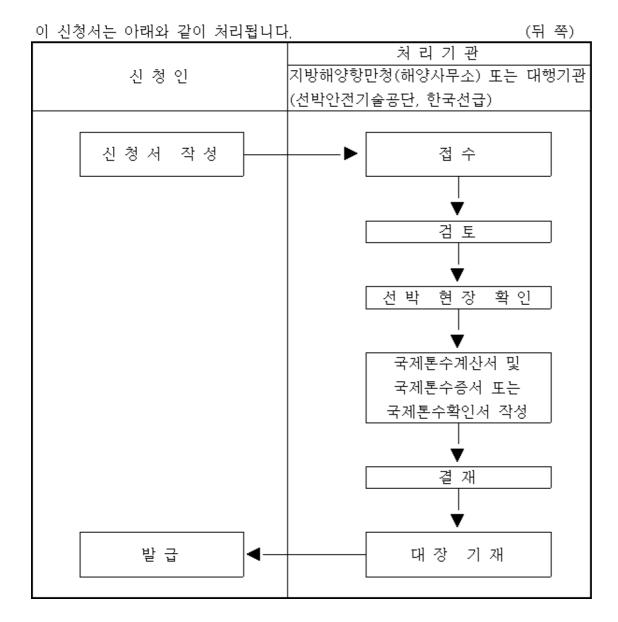
(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6.26>

(양 쪽)

	1 1111111111111	<u> </u>			1-1-1-1-1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				너	처리기간 10일	
소 유 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	)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영문)			
	신청구분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기	ч		
및 7		제1층 - 제5층 - 미	가ㅇ 배 기체그치 -	2]10 <del>7 2]</del> ]1	ടിവി നിച	
	「선박법」 제13조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ફ	일 일			
			신청인	(서명 <u></u>	E는 인)	
7	지방해양항만청(해영	· 『사무소》장				
· ·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사장 귀하				
Ę	한 국 선 급 회 장					
	첨부서류: 일반배치도			<u>수</u>	수료	
		서바초토스 츠7	성에 관한 국제협약」			
			3세 년년 국제합국회 2립한 외국정부 또는	<u>.</u>		
			-터 총톤수 측정을 받	·		
	해 8 최국 8부가 8 은 선박은 제외합니				스 츠저 스	
은 선박은 제외합니다) 선박톤수 측정 3. 중앙횡단면도 수료표 또는 다						
3. 공항하면 보 4. 강재(재료)배치도				소년 개호 서 정하는		
5. 상부구조도			' = ''	기준에 따		
│ ○ ○ ○ ○ ○ ○ ○ ○ ○ ○ ○ ○ ○ ○ ○ ○ ○ ○ ○			1 ' ' -	· [ ]		
및 순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비고: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						
<u> </u>	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	니다.				
					210ma×297ma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앞 쪽)

증서번호 2 Certificate					
Cerunicate	NO,	국 제 톤 수	- 중 서(19	969)	
F	INTER	RNATIONAL TONN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AGĘ CERTI	FICATE(1969)	
1969년 - 발효된 대한(	선박톤수 3 미구이 귀히	즉정에 관한 국제협약 라이리	5」에 따라 월	날은 협약이 1982 날행합니다.	년 7월 18일에
Issued ur	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	al Convention	
		, 1969, under the au			
or norea ro: by	r wnich u	ne Convention came	into force o	n the loth day	or July, 1962
ин	HHH ÷ T	 E는 호출번호	IMO 번호	선적항	연월일 <sup>(루)</sup>
Name or   1		r는 프로먼프 Number or Letters	IMO	Port of	단물론 *Date
Ship '			Number	Registry	
(3) 3101	al =1 =164 al 1	1 m L 0 11=1 71 7 7 1		   Lair#ot alog //	מו ארב אטוליוו
		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 ·개조를 한 날째[협약		날씨(엽삭 세2소(	別 또는 전막에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d or the :		
construct	ion[Article	; 2(6)] or date on major character[Artio	which the s de 3(2)(b)] :	ship underwent as appropriate	alterations or
modificat	10113 Of a	주요	치수	аз арргориасс,	
	,	MAIN DIN			
길( [협약 제		너비[협약 부속서   제2규칙(3)]		강에서 상갑판까? 속서 제2규칙(2)]	지의 깊이
Len,		Breadth[Regulation	M oulded	Depth amidshi	ips to the
[Article	2(8)]	2(3)]	Upper Dec	k[Regulation 202	3)]
		선 박 의 THE TONNAGE C	· 톤수 ···································	D ADD	
국제 <del>총</del> 톤수		THE TONNAGE C	r ind on.	r ARE	
GROSS T	ONNAGE				
순톤수 NET TON	NAGE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 국제협약」	의 규정에 따라 (	이 선박의 톤수
가 결정되었{ This is t		『니다. that the tonnages	of this sh	in have h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Measuremen 년	t of Ships 鬼	, 1969, 일	에서 반했	하였습니다.	
(증기	시의 발행 <sup>=</sup>	<del>-</del> 장소)	<u>(</u> 발행일)	-1 X U -1 -1.	
Issued at		, thus of certificate)	ne (day of iss	day of	
(FI	ace or issi	ae of ceruficate) 해양수산부장관(기			
		Minister of Oceans a	nd Pisherie	3 Off:>	
서명자는 (	이 증서를	(Regional Maritime / 발행함에 있어서 위:	Anairs and r 의 정부로부터	fort Office) 게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 issue this ce		clares that he is du	ly authorized	d by the said (	iovernment to
1110 00		선박안전기술	·공단이사장		
	Preside	ent of Korea Ship Sa	afety Techno	logy Authority	
		한국선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 ×297mm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	S INCLUD	ED IN TONNAG	E						
국 저	총 톤 수		ਹੁੰ	· 톤 수						
GROSS	TONNAG	E	NET	TONNAGE						
장소의 명칭	위치	길이	장소의 명칭	위치	길이					
Name of Space	Location	Length	Name of Space	Location	Length					
제외 장소[협약의 Excluded spaces 위 장소 중 폐위 모두 해당되는 곳 An asterisk(*) those spaces comprise both e spaces,	[Regulation 장소 및 저 은 별표(*)로 should be listed abo nclosed and	n 2(5)] 메외 장소에 로 표시한다. added to ve which d excluded	여객의 정원수(협약 Number of passer 정원이 8명 이하인 Number of passer more than 8 berth 그 밖의 여객 정원 Number of other 형 홀수[협약의 보 Moulded draugh	ngers(Regulat 여객실의 여객 ngers in cabin ns 수 passengers 루속서 I 제4구	ion 4(1)) 정원수 ns with not 구칙(2)]					
최초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									
Date and place o			t							
전회의 측정일 및	측정 장소									
Date and place o	of last previ	ious remeas	urement							
비고										
REMARKS: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3,24>

(앞 쪽)

증서번호 제

Certificate No.

국 제 톤 수 확 인 서

TONNAGE CERTIFICATE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적항 Port of Registry	연월일 <sup>(주)</sup> *Date

(주) 킬이 거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날짜[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날짜[협약 제3조(2)(b)]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construction[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 주요 치수 MAIN DIMENSIONS

길이 [협약 제2조(8)] Length [Article 2(8)]	제2규칙(3)] Breadth[Regulation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깊이 [협약의 부속서 제2규칙(2)] Moulded depth amidships to the Upper Deck[Regulation 2(2)]

선 박 의 톤 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_

순톤수

NET TONNAGE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 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녀 \_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발행일) (증서의 발행 장소)

Issued at day of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y of issue)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선박안전기슬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S INCLUDED IN TONNAGE									
국 제	SPACE ] 총 톤 수	S INCLUD	ED IN TONNAGE 순 톤 수						
	TONNAG	E		CONNAGE					
장소의 명칭	위치	길이	장소의 명칭	위치	길이				
Name of Space	Location	Length	Name of Space	Location	Length				
Name of Space  제외 장소[협약의 Excluded spaces 위 장소 중 폐위 모두 해당되는 곳 An asterisk(*) those spaces comprise both expaces, 최초의 측정일 및 Date and place o	부속서 I 제 [Regulation 장소 및 저은 별표(*)로 should be listed abounclosed and	Length   2규칙(5)]  1 2(5)]  1의 장소에  2 표시한다.   added to   ve which   d excluded	Name of Space 여객의 정원수(협약 Number of passens 정원이 8명 이하인 이 Number of passens more than 8 berths 그 밖의 여객 정원= Number of other p 형 홀수[협약의 부 Moulded draught	Location 의 부속서 저gers(Regulat 여객실의 여객 gers in cabirs 수	Length  14규칙(1)) ion 4(1)) 정원수 ns with not  구칙(2)] n 4(2)]				
비고 REMARKS:	· -								
REWARKS.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1,18>

(앞 쪽)

│ │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 ├								
	구세는무증시(	. 녹세순구확인	시/ 현경	宣白化"	3 AI	10 일		
소	성명(대표자명)		생년월	일				
유	주소							
자	상호				(전화:	)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변경사항	변경 전	1		변경 후			
	신청구분	□국제톤수증서		제톤수확9	인서			
	신청사유							
측정	을 받으려는 날짜							
및 7	장소							
	「선박법 시행규칙	」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제	ll톤수증서	(국제톤수	확인서)의		
변경	경발급을 신청합니다	<b>라</b>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귀하 한 국 선 급 회 장

#### ※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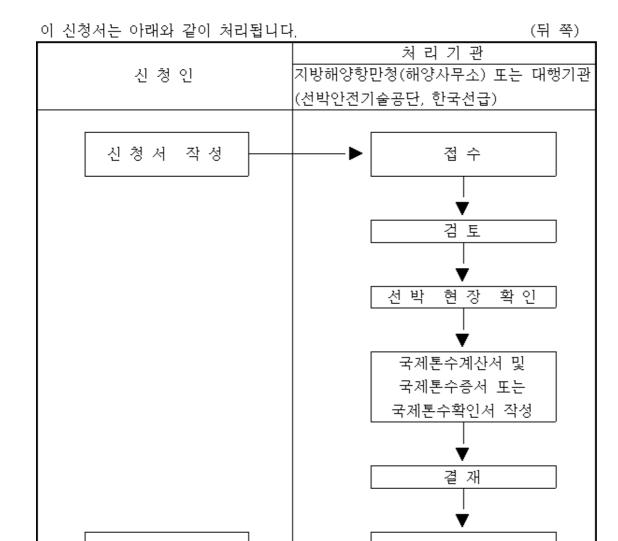
-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선박의 구조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 변경 등에 따라 국제톤수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선박국적증서 사본(「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등록사항 중 선박의 명칭·선박번호·호출부호 및 선적항이 변 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따릅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발 급

법제처 42

대장 기재

■ 선박법 시행규칙 [별자 제18호서식] <개정 2014,6,23>

## 선박 멸실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느	두운 란은 신청	인이 기재하지 ?	않으며,[]0	II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	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1일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I
소유자	조소(도로면	 ) 및 연락처(?							
	1 - (	/ Æ L TANK	C4C4 0/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선적항				국제톤수증서 등	등의 번호			
	<u>-</u>	[]멸실·침	]멸실·침몰 또는 해체 []국적상실 []선박의 존재 여부 불분명						
	신고 사유	[]국제항해	를 아니 함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대	기만이 됨			
신청내용	비고								
r서바버.	제 1 3 조 제 //한	하 및 간으 버	지해 규칙 표	세 20 조 에 대	h라 선박멸실 등(	에 과하 시	L하나음	시고하다	ILI
.5.461	VII 1 0 T VII 4 8	5 A EC 8	~ S   ¬ ^	11 20 ± 011 11	id chee o	W 22 A	182	C 7 6 0	1-1.
							년	월	일
			신청인	1					
			281	<u>.</u>				(서명 또는	인)
OOAlt	방해양한민	<sup>난청 (해양人</sup>	나무소)장	귀하					
	0 41 0 0 1	28(410)	. 1 1 2 / 0	.,-,					
구비서	류 없:	 						수수료	
								없음	
			, ;	처리절 차					
신고서	작성	<b>→</b>	졑	 1수, 결재	<b>→</b>			대장 정리	
 신고9	 DI		Z) j	방해양항만청 排양사무소)		١		방해양항민 해양사무소	 !청
	-		(ō	개양사무소)			(1	해양사무소	:)
					210m	m×297mm[백	상지 80	0g/㎡(재활	용품)]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0,6,>

###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	두운 란은 (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	간 즉시			
	성명(법인	명)		생년월일(법인동	등록번호)		
소유자	주소(도로	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선박의 명	칭					
	선박의 용	도	선박번호				
	IMO번 호		호출부호				
	선적항		총톤수		톤		
신청내용	W. 7 1. 0	변경 전					
	변경 사유	변경 후					
「선 박법	,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	세1항에 따리	· 선박원부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지 소)장	방해양형	함만청(해양사무 <sub>귀하</sub>	ŀ		,,,,,,,,,,,,,,,,,,,,,,,,,,,,,,,,,,,,,,,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 500원 서류 ※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 차				
신청서 작성	<b>d</b>	접수, 검토, 결재 → 선박	대장 정리, (국적증서 작 발급	성 및 →	수 령		
신청인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	지방해양항만경 (해양사무소)	A	신청인		

■ 선박법 시행규칙 [별자 제20호서식] <개정 2014,6,23>

##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원	<u>  란은 신청인이 기자</u>	H하지 않으며,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0 =	성명(법인명)				생년윌일	날(법인등록	번호)	
소 유 자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호 등)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IMO번호			
선 박	선박의 용도				호출부호			
	선적항				총톤수			톤
말소의 사유	[ ]침몰	[]해체	[]수출	[]	그 밖의 시	ŀ유		
말소의 구분	[]선주 말소	[]직권 말소						
비고(말소의	사유를 구체적으	로 적습니다)						
「선박법」 제2	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	3조제1항에 따	라 위와 같(	이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합	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 방해양	함만청장(해양	<b>;사무소</b> 장)	귀하					
		조제 1항제 1호 · 제3호		): 말소등 <b>록</b> 의	기사유를 증	동명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 ' "	'조제1항제2호의 경약 등본(등기대상 선박민						
세출시ㅠ		당권자·공유자 등 ( 의 등본(이해관계인(			당 이해관계	인에게 대항	할 수	수수료
지방해양항만청장			7 ME 872 0	1108447				200원
(해양사무소장) 확인사항	수출신고필증							
		행정정보	보 공동이용 동	의서				
통하여 위의 지방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7 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방에 따른 행정 아니하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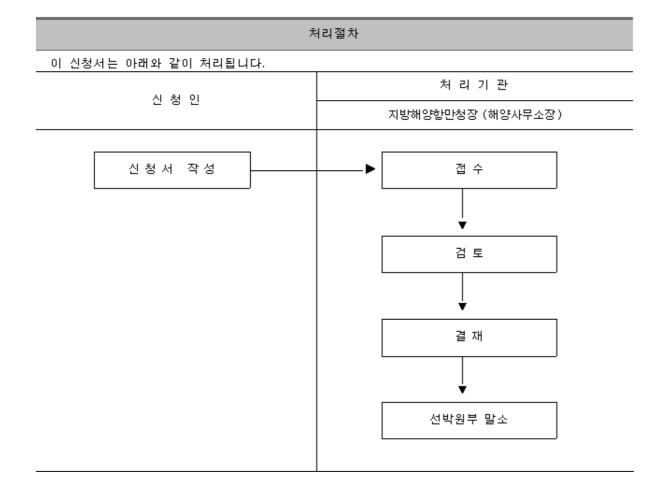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명 또는 인)

법제처 45

신청인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8.2.4>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8.2.4>

■ 선박법 시행규칙 [별자 제23호서식] <신설 2014,10,6,>

##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	두운 란은 신청인	l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	기간 1	일		
	성명(법인명)			생년	월일(법	일(법인등록번호)		
신청자	주소(도로명) 5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5.9V				(전화번호	:		)	
	소유자와의 관	·계(소유자가 아닌 이해관	·계자가 신청	영하는 경우)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IMO번호				
	총톤수	총 톤수 말소 일자						
신청내용	확인서 종류							
		[ ] 국문	[]영	문				
	신청 사유							
 「선박법	1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리	· 선박등록	루 말소확인서	발급	을 신청합니다	ŀ.	
						년 월 일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u>u</u> )	
OO지 방	방해양함만청	(해양사무소)장		귀	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500원		
		처리	절차					
신청서 3	작성 →	접수, 검토, 결재	→ <sup>3</sup>	확인서 작성 및 발급	<b>→</b>	수령		
신청인	 !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	_	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선박법 시행규칙 [별자 제24호서식] <신설 2014,10,6,>

##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제 호

말소당시 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소								
선박	번호			÷	총톤수			톤	
ІМО	번호			호	출부호				
선박의	종류			선박	박의 명칭				
선적	항				선질				
범선의	범장				이 종류와 수				
추진기의 수				3	조선지				
조선	· !자			7	진수일				
주요:	치수	길이	m	너비	m	깊이		m	
말소'	일자								
말소	사유								
	선박은 「 인합니다.		시행규칙」	제 23조	5에 따라 선	선박등록	하 말소도	었	
						년	월	일	
	대한민·	국[지동	방해양항만청	형(해임	<b>፣</b> 사무소)징	<u> </u>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선박법 시행규칙 [별자 제25호서식] <신설 2014,10,6,>

# CONFIRMATION OF CANCELLATION OF VESSEL'S NATIONALITY

Confirma	tion Number	:					
	Name						
Owner	(Company)						
	Address						
Offici	al Number			Gross	Tonnage		tons
IMO	Number			Signal	Letters		
Kind of Vessel				Name	of Vessel		
Port of Registry				Materia	l of Hull		
R	iggings			Type and Number of			
(if a Sa	iling Vessel)			Engines			
Kind and Number of Propellers				Where Built			
Name of Builders				Date of Launch			
Main	Dimensions	Length	m	Breadth	m	Depth	m
	Cancellation egistration						
	f Cancellation						
It is	hereby conf	irmed th	at the abov	ve describ	ed vessel w	as cano	eled from
Nationa	ality of the	Repub	lic of Ko	orea in	accordance	with	Ship Act
	ement Regula	-					•
		]	Γhe	day of	•		
		<u>(</u>	(Signature)				
		<u>(</u>	Official Pos	ition)			

210mm×297mm(백상지 120g/㎡)